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1. 9. 17 선고 2021가단20113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서울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이진성, 유장미

피 고 A

변 론 종 결 2021. 8. 13.

판 결 선 고 2021. 9. 17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-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. 2. 13. 접수 제65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B에 대하여 ‘28,394,714원 및 이에 대한 2018. 9. 18.부터의 지연손해금’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.

나. B은 2018. 2. 7.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35,000,000원의 매매계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고, 2018. 2. 13.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’라고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다.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,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다(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14695호 및 2019나83177호, 이하 ‘이 사건 선행판결’이라 한다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이 사건 선행판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른바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(매도인: B, 위탁자: 피고의 어머니 C, 수탁자 겸 매수인: 피고), 피고는 B에게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. 그런데 B이 위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, 원고는 B의 채권자로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.

나. 판단

직권으로 살핀다.

1) 통상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일 것을 요한다(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). 한편,

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,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·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(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3다71784 판결 등 참조).

2)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, ① 원고가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B이 무자력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 오히려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. 원고가 인용한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1다483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판결로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여 원용할 것이 아니다. ② 한편,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과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, 원고가 B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(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B의 C에 대한 채무,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승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). 따라서 원고가 B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.

판사 허명욱

별지

목 록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서울 강북구 D E동

[도로명주소] 서울 강북구 F

벽돌조슬라브 2층 다세대주택

1층 109.36㎡

2층 109.36㎡

지층 109.36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서울 도봉구 D 대 507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2층 G호 벽돌조 50.24㎡

(대지권의 표시)

소유권대지권 12분의 1. 끝.

